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5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과 지급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및 별표 3 신설)

1)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

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 3)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 1)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3)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인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5조 신설)

대통령경호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8. ~ 5. 7., 5. 12.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하고,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

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⑦ 처장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호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제3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

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건의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처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6조(종전의 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상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신규, ☐ 추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음 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발생 일시 및 장소			
	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구 분	[] 물건의 멸실·훼손 손실 [] 그 외 재산상 손실 [] 생명·신체 손실			
신청액	손실액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통지 방법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그 밖의 방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통령경호처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	---	------------

(뒤쪽)

첨부서류				
구분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산상 손실	물건의 멸실 · 훼손	수리비	1. 수리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 2.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교환가액	교환 물품의 구매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멸실 · 훼손 외 손실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실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명 · 신체 손실	사망		사망진단서	주인등록표 등본
	장해 · 상해		장해 · 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등),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대통령경호처장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 이용 ·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실확인, 통지, 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처리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신청을 위임해야 합니다.
3.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경호처장이 증빙 ·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손실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 수 처리기관 (대통령경호처)	➔	심의 · 의결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 처리기관 (대통령경호처)
---------------	---	-------------------------	---	--------------------------------	---	----------------------------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결정 통지서
[]각하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10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 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하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대통령경호처장

직인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청구 (신청) 내용			
접수일시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대통령경호처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 금액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u> <u>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u> <u>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u> <u>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u> <u>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u> <u>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u>

<신 설>

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
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
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
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
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
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
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
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
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청구인에
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
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⑦ 처장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

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 설>

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
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
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
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호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제3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
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
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신 설>

<신 설>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
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처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신설>

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보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손
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u>제36조</u> (생 략)	<u>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u> <u>제47조</u> (현행 제36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	
연 락 처	(02) 800 - 5513